[별표 5]

<개정 2000.1.10, 2000.12.29, 2001.12.31, 2002.12.30, 2003.12.30, 2004.6.5, 2004.12.3, 2005.2.19>

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(제8조제3항관련)

| 구 분 | 비 용 |
|---|---|
| 1.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| 가. 자체기술개발<br>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(이하 "전담부서"라 한다)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<br>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<br>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(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)<br>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(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·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<br>나.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<br>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<br>㉮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<br>㉯국·공립 연구기관<br>㉰정부출연 연구기관<br>㉱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(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<br>㉲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(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전담부서<br>㉳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<br>㉴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<br>㉵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<br>㉶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학협력단<br>㉷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·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<br>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(조교수이상에 한한다)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|
| 2. 기술정보비 | 가.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<br>나.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<br>다.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|

| | |
|---|---|
| | 라.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(세미나, 웍샵, 심포지엄을 포함한다) 참석비 |
| | 마.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|
| 3. 기술훈련비 | 가. 자체훈련비 |
| |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|
| |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|
| | 나. 위탁훈련비 |
| |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|
| |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|
| |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|
| |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|
| |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|
| | 다.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|
| | 라.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|
| | 마.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|
| | 바.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|
| | 사.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|
| 4.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| 가. 전담부서건물(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·증축·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|
| | 나.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·시험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|
| | 다.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(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|
| 5. 중소기업 기술지 | 가.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|
| | 나.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|
| | 다.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|

| | |
|---|---|
| |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<br>라.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<br>마.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<br>바.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|
| 6.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| 가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<br>나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<br>다.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(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대한 출연금<br>라.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<br>마.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<br>바.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을 포함하되, 이공계에 한한다)에 기부하는 장학금 및 기부금품 |
| 7. 개발기술의 활용 | 가.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<br>나.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<br>다.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|
| 8.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육성 |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·연구개발분담금등 부과금 |
| 9.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등에의 출자 |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|
| 10.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|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<br>①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<br>②소프트웨어·데이타베이스의 유지·보수·개발을 위한 비용 |
| 11. 상표 및 | 고유상표(공동상표를 포함한다)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|

| | |
|---|---|
| 디자인의 개발 | |
| 12.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| 가.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·기자재·장비·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<br>나.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|
| 13.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 | 가.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<br>나.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<br>다. 중소기업이 부품·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<br>라.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|
| 14. 수탁기업체 협의회의 육성 |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|